

## 보편관할권이란 무엇인가?

### 관할권

관할권이란 법원이 특정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 국내관할권

국내관할권은 범죄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해당국 국민인 경우, 또는 범죄가 해당국 내에서 발생하거나 영향을 미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역외관할권

역외관할권은 특정 상황에 적용되며, 국내 법원이 해당국 영토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합니다.

### 보편관할권

보편관할권은 역외관할권의 한 형태입니다. 가해자가 해당국 국적자가 아니며 범죄가 다른 국가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중대성으로 인해 모든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발상에 근거를 둡니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 지도자를 상대로, 도쿄에서 일본 군 지도자를 상대로 진행된 재판 이후 보편관할권의 개념은 더욱 발달했습니다. 이 재판소들은 과거 소추한 전례가 없었던 평화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반인도범죄를 죄명으로 소추하였습니다. 당시 이 재판소들의 관할권에 대한 근거는 보편관할권이 아니었으나, 사실상 오늘날의 보편관할권의 한 형태를 적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1949 년 제네바 협약이 채택되어 전쟁법과 전쟁범죄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모든 협약 당사국이 자국 법원에서 전쟁범죄 가해자를 소추하거나, 소추 의지가 있는 다른 국가에 인도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 이후 뒤따라 여러 인권 조약이 국가로 하여금 침해 행위를 불법화하고 소추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4 년 채택된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을 자행한 혐의가 있는 자를 소추하거나 인도할 의무가 당사국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sup>1</sup>

오늘날 많은 국가는 자국 영토 내 가해자가 특정되면 국내 법원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고문, 집단살해죄 등 국제 범죄를 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 년 독일 법원은 시리아에서 자행한 고문을 비롯한 반인도범죄 혐의로 시리아 국적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한 구금시설에서 고문, 살해, 강간, 성폭행이 자행될 당시 해당 시설을 총괄한 혐의가 있는 전직 정보 관료였습니다. 이후 그는 시리아에서 독일로 이동하여 망명을 허가 받았는데, 결국 항소 가능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sup>1</sup> 단,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고문이나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인도해서는 안 되며, 해당 개인이 고문을 자행한 혐의가 있는 자라도 마찬가지다. 당사국은 고문을 처벌할 의무가 있으나, 고문을 방지할 의무도 지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국제앰네스티가 2012년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 개 이상의 범죄에 대해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163 개국입니다.<sup>2</sup> 비정부기구 Trial International 이 보고하기를 2021년에 전세계적으로 125건의 국제 범죄 혐의가 보편관할권에 따라 제기 되었으며, 이 중 34건은 전쟁범죄, 66건은 반인도범죄, 25건은 집단살해죄, 17건은 분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성폭력범죄 혐의였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22개의 범죄 발생국과 연관되었으며 16개 국가에서 소추가 진행되었습니다.<sup>3</sup>

보편관할권을 활용하여 반인도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소추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 규명이 부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책임 규명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국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또는 범죄 발생국 내 특별재판소 설립이나 국내 사법절차 개시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소추할 정치적 의지가 없거나, 불안정한 상황, 자원 부족,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독립적 사법부의 부재 등을 이유로 범죄를 소추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의 실현을 위해 보편관할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여타 인권 주체들은 반인도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를 심판할 수 있도록 널리 인정받는 역외관할권 또는 보편관할권 원칙을 적용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관할권을 행사할 것을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

<sup>2</sup> Universal Jurisdiction, Strengthening this Essential Tool of International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필수적 국제사법 수단인 보편관할권의 강화, 국제앰네스티), 2012 <https://www.amnesty.org/en/wp-content/uploads/2021/06/ior530202012en.pdf>

<sup>3</sup> Universal Jurisdiction Annual Review 2022, Trial International (2022 보편관할권 연례검토, Trial International), [https://trialinternational.org/wp-content/uploads/2022/03/TRIAL\\_International\\_UJAR-2022.pdf](https://trialinternational.org/wp-content/uploads/2022/03/TRIAL_International_UJAR-2022.pdf)